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64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6월 19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뿐만 아니라 이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, 비상설형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료는 사전에 시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위임사항을 추가하였음.
- 이용료 감면대상을 부과대상에 맞추어 아동으로 한정하고,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족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비상설형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료는 시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 (안 제7조의2제2항).
-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족을 추가함. (안 제7조의2제3항 별표)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의2제2항 중 “키즈카페”를 “키즈카페의 이용대상과”로, “원가계산,”을 “시설형태와 원가계산 및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비상설형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 시설유형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.

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]

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(제7조의2제3항 관련)

※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, ‘아동’인 경우에 적용한다.

대 상	감면액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원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 중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 및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6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8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9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 중 특수임무유공자의 직계비속 및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10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제1호 중 의상자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의 직계비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. “다둥이 행복카드”를 소지한 가족 13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	입장료 전액 감면

수정(제안)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취약계층 아동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-----.	4. ----- ----- -----.
가. ~ 마. (생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바. 그 밖에 <u>시장</u> 이 인정하는 아동	바. ----- <u>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	바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설></u>	5. “ <u>서울형 키즈카페</u> ”란 <u>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.</u>	5. (개정안과 같음)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

<u>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 제7조의2(<u>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</u>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<u>실내 어린이 놀이시설</u>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	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7조의2(<u>서울형 키즈 카페의 설치 및 운영</u>) ① ----- ----- --- <u>서울형 키즈카페</u>를 ----- -----.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형 <u>키즈카페</u> 이용료는 <u>원가계산</u>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 <신설>	(개정안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7조의2(<u>서울형 키즈 카페의 설치 및 운영</u>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형 <u>키즈카페의</u> 이용대상과 이용료는 <u>시설형태와 원가계산</u> 및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<u>비상설형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 시설유형 및 면적 등을</u>
--	--	---

		<u>고려하여 사전에 시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.</u>
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<u>별표 1과 같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와</u> -----.	③ (개정안과 같음)
④ 시장은 <u>실내 어린이놀이기구</u> 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	④ ---- <u>서울형 키즈카페</u> 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④ (개정안과 같음)
제7조의3(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 지원) ① 시장은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7조의3(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 지원) ① ----- ----- <u>중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</u> --- ----- -----.	제7조의3(민간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등 지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
<u>1. 민간 실내 어린이</u>	<u><삭 제></u>	(개정안과 같음)

<u>놀이시설 등에 대한 인증서 교부</u> <u>2. ~ 4.</u> (생략)	<u>1. ~ 3.</u> (현행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와 같 음)	(개정안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바목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서울형 키즈카페”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의 제목 “(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및 운영)”을 “(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”을 “서울형 키즈카페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실내 어린이 놀이기구 이용료는 원가계산,”을 “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대상과 이용료는 시설형태와 원가계산 및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비상설형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 시설유형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제3항 중 “별표 1과”를 “별표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”을 “서울형 키즈카페를”로 한다.

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등에 대하여”를 “중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.

별표 1을 별표로 하고, 같은 표(중전의 별표1)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감면 기준(제7조의2제3항 관련)

※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, ‘아동’인 경우에 적용한다.

대 상	감면액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원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 중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 및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6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8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9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 중 특수임무유공자의 직계비속 및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10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제1호 중 의사상자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의 직계비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. “다둥이 행복카드”를 소지한 가족 13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	입장료 전액 감면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4. "취약계층 아동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. 가. ~ 마. (생략) 바. 그 밖에 <u>시장이</u> 인정하는 아동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.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(이하 " <u>시장</u> "이라 한다)----- 5. " <u>서울형 키즈카페</u> "란 아동의 <u>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지원</u> 을 목적으로 <u>시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.</u>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</u> 장(이하 " <u>시장</u> "이라 한다)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<u>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2(<u>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</u>) ① 시장은 아동의	제7조의2(<u>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</u>) ① -----

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 <단서 신설>

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의3(민간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민간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---- 서울형 키즈카페를 -----
-----.

② -----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대상과 이용료는 시설형태와 원가계산 및 -----
------. 다만, 비상설형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 시설유형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.

③ -----

----- 별표와 -----.

④ ---- 서울형 키즈카페를 ---

-----.

제7조의3(민간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지원) ① -----
----- 중 서울형 인
중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 -----

--.

<u>1.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</u> <u>에 대한 인증서 교부</u> <u>2. ~ 4. (생 략)</u> ② · ③ (생 략)	<u><삭 제></u> 1. ~ 3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 지와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